

4.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

- (현황) 국내 전자상거래는 경제 규모나 인터넷 사용자 수를 볼 때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
- (과제) 전자상거래의 속성 상 초래되는 제도적 애로 요인을 제거하고, 시범사업의 조기 수행을 통한 전자상거래 모델 제시, 정부 차원의 전자상거래 수요 창출 등을 추진해야 함

□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

- 인터넷 사용 인구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미약하지만, 성장 잠재력은 큼
 - (국내 시장 규모) 현재 국내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120만 명¹⁾으로 세계 인터넷 인구의 1%에 근접하지만, 전자상거래 규모(1998년 추정치)는 150억 원으로 세계 규모의 0.03% 가량에 불과한 실정임
 - (전망)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인터넷 사용자 수를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, 현재 연간 100% 가량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큼

□ 전자상거래가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

- (기존 거래와의 차이) 전자상거래는 전자부호에 의한 거래, 비대면(非對面) 거래, 초국경(超國境) 거래라는 특징을 지님
 - (전자적 거래) 정보나 제품이 전자 부호로 교환되고, 전달 매체로는 개방성을 지닌 인터넷을 이용하므로 데이터의 변조나 도용이 매우 용이함. 따라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, 기술적 장치가 필요함
 - (비대면 거래) 통신망을 매개로 하는 원격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식별하기가 불가능함. 따라서 거래선의 신원과 거래 정보의 진실성을 등을 확인하고 보증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
 - (초국경 거래) 인터넷이라는 국제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국 차원의 제도 환경 정비보다는 국제적 협조가 필수적임
- (새로운 문제) 전자상거래의 속성 상 새롭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등장하는

1) 인터넷 관련 조사 전문 업체인 Nua Ltd.에 따르면,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'98년 7월 기준으로 1 억 2,980만 명으로 추정됨. 인터넷 사이트 <http://www.nua.ie> 참조

데, 이를 해결하는 데는 몇 가지 제약 요소가 존재함

- 첫째, 기존 상거래 관습 및 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
- 둘째, 제도 정비에 관련 기술의 진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
- 셋째, 제도 정비에 다른 국가들과 상호 호환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

<전자상거래 속성에 따른 주요 해결 과제>

| 특징 | 대응 방식 | 구체적 과제 | 정비 대상 법령 예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전자적 거래 | 전자정보 보호 | 지적재산권 보호, 개인정보 보호 | 저작권법,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,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|
| 비대면 거래 | 거래신뢰성 확보 |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, 전자서명, 전자인증, 소비자 보호 | 민법, 상법, 민사소송법, 형사소송법, 소비자보호법, 공정거래법 개정, 전자서명법, 전자거래기본법, 전산망법 제정 등 |
| 초국경 거래 | 국제적 협력 | 조세, 인증, 지불체계, 정보인프라 등의 국제 표준화 | 조세관계법 등 |

□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

- (기본 방향) 성장을 지체시키는 제도적 병목을 최단 시간에 해소하고, 초기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
 - 첫째, 병목 제거를 위해서는 우선 순위에 따른 순차적 제도 정비가 필요함. 현재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전자서명과 전자인증 제도의 실시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,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임

<우선 순위에 따른 정책 과제의 배열>

| 지적재산권 | 조세제도 | 전자지불제도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전자서명 · 전자인증 | 소비자 보호 | 개인정보 보호 |
| 정보통신망 고도화 | 인력양성 | 컨텐츠산업 육성 |
| 높음 ◀◀◀ | 우선순위 | ▶▶▶ 낮음 |

- 둘째, 제도적 환경 정비에는 국제 규범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국제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함. 특히 통상마찰의 가능성성이 큰 지적재산권과 조세 분야에서는 체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²⁾

- 셋째, 시범 사업의 초기 완료와 초기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을 적극 추진해야 함

- (과제별 대응 방안)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시장에서의 지위가 향후 5년의 대응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 대비책을 세워야 함
- (재정금융) 전자지불제도의 정비는 민간에게 맡기더라도 조세체계 정비 과정에서는 세제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
- (법제도)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구축하고, 국제 규준에 맞는 제도 환경 정비가 초점임
- (인프라) 하드웨어로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소프트웨어로서 컨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과 대책이 집중 추진되어야 함

<주요 영역별 정책적 대응 방안>

| 구분 | 과제 | 대응 방안 |
|------|--------------|--|
| 재정금융 | · 조세 체계 정비 | · 국제규범(OECD, WTO)을 반영하여 정비 · 외국의 조세 감면 조치에 대응하여 세제 지원 체제 마련 |
| | · 전자지불제도 | · 요소기술 확보와 외국과의 호환성 확보 |
| 법제도 | · 전자서명, 전자인증 | ·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, 전자상거래의 법적 보호 |
| | · 소비자 보호 | · 계약철회권, 재판관할권의 귀속 |
| | · 개인정보 보호 | · 개인의 기본권 보호 및 정보 규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 |
| | · 지적재산권 보호 | · 디지털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정리 |
| | · 내용물 규제 | · 反사회적 유통물에 대한 규제(등급표시제, 필터링시스템)와 관련 기술 확보 방안 마련 |
| 인프라 | · 정보통신망 고도화 | · 전화망, 유선방송망, 무선망의 통합과 고도화 추진 · 인터넷 주소의 관리 방안 마련 |
| | · 컨텐츠산업 육성 | ·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경쟁력 확보 |
| | · 전문 인력 양성 | · 전자상거래 관련 소요기술의 선정과 담당 인력 양성 |
| 수요창출 | · 시범사업 초기 완료 | · 하나의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모델 제시 |
| | · 수요 기반 창출 | · 정부의 구매활동을 전자상거래와 연동시켜 수요 창출 |

(강 용 중 klucas@hri.co.kr ☎724-4046)

2) 미국의 경우 인터넷면세법과 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 등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, 전자상거래의 전세계적 확장을 위한 대외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